서울특별시 마포구 에너지 조례안 심사보고서

2020. 9. 9. 복지도시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20. 8. 25. 마포구청장

나. 회부일자 : 2020. 8. 26.

다. 상정일자 : 제243회 임시회 제3차 복지도시위원회(2020. 9. 9.)

상정, 심사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□ 제안설명자 : 환경과장

1) 제안이유

「에너지법」에 따라 지역에너지시책의 수립·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에너지 절약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의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저감하는 등 에너지 관련 시책을 체계적·종합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.

2) 주요 내용

가. 조례의 목적, 정의 및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(안 제1조~안 제3조)

- 나. 에너지계획의 수립 및 건축물의 에너지 합리화 및 공공부문 에너지 절약에 관한 사항(안 제4조~안 제7조)
- 다. 에너지복지 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(안 제8조)

라. 에너지위원회의 설치·운영 및 구성에 관한 규정(안 제9조~안 제13조) 마. 교육, 홍보 및 포상에 관한 사항(안 제14조)

3. 검토의견(신준호 전문위원)

가. 조례 제정 배경

- 2015년 파리기후협약의 체결 이후 에너지 부분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의무적 행태로서 우리나라도 금년부터 온실가스 감축 의무가 있어 2030 년까지 온실가스 배출 예상량 대비 37% 감축하기로 선언한 바 있음.
- 전세계적으로 탈원전, 탈석탄 선언에 따라 신·재생에너지의 개발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「에너지법」에서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지역에너지정책 수립을 강조하여 지역에너지시책의 수립·시행을 의무화하고 있음.

나. 주요 조문 검토

- 본 제정조례의 구조적 체계는 본칙 15개, 부칙 1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음.
-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제정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고 있으며, 안 제3조는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고,
 안 제4조에서는 마포구 에너지 계획을 5년마다 수립・시행할 수 있도록하고 있음.
-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는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합리화 및 신축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 확보를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. 이는 「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」제54조에 따른 정부의 녹색건축물을 확대하려는 정책 방향을 고려하면서, 「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」제4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

- 의 녹색건축물 조성 촉진을 위한 시책 수립 책무를 인용하여 세부사항을 정의한 것으로 보임.
- 안 제7조는 민간부문의 에너지 절약 분위기를 선도하고,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마련하고자 공공부분에서 에너지절약을 위해 노력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,
- 안 제 8조에서는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에너지의 보편적 사용 및 기본권
 이 제한된 계층이나 지역에 에너지의 보편적 사용이 가능하도록 에너지
 복지 사업의 실시를 규정하고 있음.
- 안 제9조부터 안 제13조까지는 신·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 등을 위한 마포구 에너지위원회 운영을 규정하고, 안 제14조는 에너지 절약 및 지속 가능한 에너지체계 확립을 위하여 구민 교육, 홍보 및 포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.

다. 종합 의견

- 현재 원자력 발전 사용 증가에 따른 사회적 갈등과 석탄발전소 미세먼지 배출 등의 에너지 생산과 이용 등에서 발생하는 위험요소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, 그 동안의 중앙집권적 에너지 정책과 시스템으로 인하여 지역의 에너지 이용혜택은 불균형적으로 이루어져 왔음.
- 이에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주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숙의적 계획수 립을 권장하고 있음에 따라 본 제정조례안의 상위법령인 「에너지법」 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국가 에너지 정책 및 시책과 연동하여 지역적 특성이 반영된 지역에너지 시책을 수립ㆍ시행 의무화하도록 하였음.
- 따라서 본 제정조례안은 우리구의 에너지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기본 방향을 정하고 신재생에너지의 개발 및 보급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계획

을 수립하는데 전문성을 기할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, 아울러,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합리화 및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 확보를 위한사항을 구체적으로 정의함으로써, 녹색건축물 조성 촉진 등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됨.

신에너지(3종)	재생에너지(8종)
수소에너지, 연료전지, 석탄 액화가스화 및 중질산사유 가스화 에너지	태양에너지, 풍력, 수력, 해양에너지,
	지열에너지, 바이오에너지,
	폐기물에너지, 수열에너지

< 표.1 신·재생에너지 현황⁵⁾ >

 향후, 구 차원의 에너지 절약 및 신·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추진을 위해 행·재정적 지원 등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행규칙 등을 면밀히 마련해야 할 것임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없음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소수의견요지 : 없음

8. 기타사항: 없음

^{5) 「}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」제2조